

# 함양군 · 경남신용보증재단

##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 위·수탁 협약서

함양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과 경남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상호협력 하에 본 협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함양군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호협력 하에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기간)** ①이 협약의 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.

② 본 협약에 대한 해지사유 발생 시 해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기본방향)** 군과 재단은 본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 원칙하에 최대한 협력한다.

**제4조(협력사항)** 재단은 함양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을 제공하며, 군은 재단의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.

**제5조(역할분담)** ①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원한다.

② 군은 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상자모집, 지원사업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사업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**제6조(위탁사업비 교부)** 사업 운영을 위하여 위탁자는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한다.

**제7조(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)** ① 재단은 위탁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정산 보고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군의 정산검사 결과 통보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군이 정하는 방법과 기한까지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도·감독)** ① 군은 재단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·감독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·보고 등을 요청하거나 현지조사·검사·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,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군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·검사·조사 결과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재단

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재단은 이를 자체 없이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안전·보건의 확보 등)** ① 재단은 위탁사업 수행 시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안전·보건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군은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조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단에게 이에 대한 시정, 필요한 조치의 실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재단은 위탁사업 수행 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,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건·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군에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.

**제10조(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)** ① 재단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업 수행 시 취득한 중요정보 및 보안을 요하는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유지

2.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·제공·수집 금지

② 재단은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재단은 군의 승인 없이 위탁사업과 관련한 중요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협약의 변경)**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.

**제12조(협약의 해지)** 군은 재단이 협약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3조(협약의 해석)** 이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르고, 관계 법령 등이 없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군의 해석에 따른다.

서명

인장

**제14조(협약의 증명)**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상호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. 2. .

함 양 군  
군수 진 병 영 (인)  


경 남 신 용 보 증 재 단  
이사장 이 효 근 (인)  
